

종오리 농장 시 차단방역요령

① 종란, 사료, 분뇨, 왕겨 등 출입차량의 GPS 장착 및 소독 실시조치

- *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독약을 유기물 조건으로 사용, 출입시 일시정지 권장(약 15분)
- * 동절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화제(산소계)를 사용 권장, 사람에게 사용금지
- * 축산차량으로 미등록(GPS 장착 및 운영 의무)할 경우 농장 방문 출입금지(미등록 운영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)
- *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한 상태로 운영금지(미준수시 운전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)

② 알운반 용기(난좌 등)는 일회용 사용 권장 또는 소독 철저

- * 플라스틱 알 운반용기(난좌)는 부화장에 반드시 방문시 마다 소독 실시
- * 플라스틱 알 운반용기(난좌)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장별 구분되는 용기를 사용

③ 부화장이 농장과 같이 있는 경우 교차오염 차단 철저

- * 부화장 동일 부지에 부화장이 있는 경우는 위험시기에는 가급적 입부화 금지
- * 동일 부지내 부화장이 있는 경우는 초생추 분양 동선과 알 반입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운영(대기실에서 교차하는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음)

④ 폐사체 및 사료 찌꺼기 등의 외부 제공 금지

- * 오리 폐사축 및 사료 찌꺼기 등에 대하여 개먹이 농장 등 외부 반출 금지

⑤ 왕겨 보관 및 구입시 오염 관리 철저 및 재사용 포대 사용 금지

- * 왕겨 보관창고 등 야생조수류 방지 철저
- * 왕겨업체 자체 및 차량에 소독을 실시하는지 확인 철저
- * 포대왕겨 구입시 새로운 포대를 사용, 재사용 포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소독 실시 확인

⑥ 산란율 저하 등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 철저

- * 종오리 특성 상 산란저하가 먼저 나타남으로 동별 평소 산란율 보다 낮을 경우 신고
산란율이 급증하는 22~35주령 사이의 종오리는 산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

⑦ 산란일지 및 폐사일지 작성 철저

- * 종오리장은 산란일지와 폐사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동별 산란율 저하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(추후 규정 개정 추진 예정)

⑧ 농장관리와 종란운반 등과 업무를 병행하여 전파 가능성 노출

- * 오리관리, 집란, 종란 운반 등 업무 병행, 업무전환시 소독 미실시로 오염 위험

■ 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의7서식] <신설 2013.4.11>

가축(계란)거래내역 관리대장

거래일자 (연월일)	일련 번호	거래 가축 의 종류	거래 마릿 수 (계란수)	구매 또는 의뢰처		판매 또는 거래처		비고
				농장주 명	소재지	상호	소재지	

※ 구입 또는 의뢰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은 곳을 적고, 판매 또는 거래처는 구입 또는 의뢰처로부터 구매 또는 위탁받은 가축을 알선·판매 또는 양도한 곳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* 상기 내용중 계란 거래내역작성은 방역상 필요로 포함

